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52803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호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5471 약정금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피고 B의 상속지분 1/5 만큼 취소한다.

○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1/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11. 19. 제977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2017. 11. 17.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코팅기계에 대한 리스신청을 받고 리스물건: 코팅기 SGZ-II -1200, 취득원가: 14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840,397원, 지연손해금: 24%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와 체결하였다.

나. 2018. 3. 13.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 및 피고 B와 함께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피고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5471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4. 12. 같은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2,23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2021. 11. 17.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2. 4. 6. 위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B에게 도달되지는 못하였다.

마. 2021. 9. 17.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315 파산 사건으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1.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회생법원 2021하면107315 면책 사건에서 2022. 3. 23.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결정은 2022. 4. 8. 확정되었으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채권자: F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결정'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들의 아버지인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11. 19. 접수 제97760호로 2018. 9. 7.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피고 B의 상속지분은 1/5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5471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구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는 2022. 3. 23. 서울회생법원 2021하민10731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원고의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이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원고의 채권에 집행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

## 별 지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빌라[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49.34㎡

2층 149.34㎡

3층 149.34㎡

4층 149.34㎡

지층 55.26㎡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5.12㎡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시흥시   
대 40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98분의 64.140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위 중 채무자 의 상속지분 1/5. 끝.

